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26.4.7 공포, ’26.10.8 시행)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향후 개별 세부 기준 및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되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같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여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배상 심의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배상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한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조정했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일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도 마련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수석전문관	최재석 (044-201-6744)

법률	시행령(안)
▶ 제2조(정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함	▶ 제2조(독성 화학물질 확인 기관) 독성 화학물질 확인 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가습기살균제 노출사실, 질병 발생·악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른 역학적 상관관계	▶ 제3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전문 조사·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연구(역학, 건강모니터링, 독성, 임상의학 연구 등)
▶ 제7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주무부처)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 - (지원조직) ①심의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②범부처 협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전문위원회 신설	▶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심의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 규정 - 심의위원 해촉 사유 규정
	▶ 제9조(지원조직) - 국조실에 배상지원단 운영 근거 규정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 조사판정 및 재심의 전문위원회 각각 구성·운영 - 관련자들에게 수당·여비 지급
	▶ 제14조(자료제출 및 정보시스템 이용 등 지원) - 기후부가 심의위원회의 개별배상심의 지원
▶ 제12조(손해배상금의 신청) 신청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	▶ 제15조(손해배상금의 신청 등) - 신청인의 제출 서류(본인 확인, 피해, 소득 등)
▶ 제14조(지급결정) - 심의위는 180일 이내 결정 -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7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 - 손해배상 결정기준(유족배상, 장례비, 치료·간병비, 휴업·장해배상, 위자료 등) - 세부적인 기준은 심의위가 정함
▶ 제16조(재심의) - 심의위는 90일 이내 결정 -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19조(재심의) - 재심의 신청절차 및 심의결과통보
▶ 제18조(치료비등 배상에 대한 특례)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지속해서 지급 가능케하여 피해자 선택권 강화	▶ 제22조(계속치료비의 배상 신청 및 결정 등) - 계속치료비 신청서 제출 ▶ 제23조(계속치료비의 지급 신청 및 절차 등) - 계속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및 종류

▶ 제20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운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지정·운영	▶ 제24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설립·운영) - 센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지정 - 손해배상과 관련한 의료·법률 상당 등 피해자 지원 업무 규정
▶ 제22조(건강모니터링 실시) 피해자 건강상태 관리 위해 건강모니터링 실시 및 이에 대한 피해자 협조	▶ 제27조(건강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 전문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 제28조(건강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계속치료비 지급중단 경우 및 결정 절차
▶ 제23조(교육지원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 중·고교 근거리 우선 배정 및 대학 교육비 지원	▶ 제29조(지정입학 등 교육지원) -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서 입학학교 지정 ▶ 제30조(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 최대 8학기 이내의 등록금 지원
▶ 제25조(계속치료비 지원) 피해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	▶ 제31조(계속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건보공단 협조를 통해 지원
▶ 제31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 원료사는 별도 분담금 납부 - 미납 시 가산금, 강제 징수 등	▶ 제36조(분담금의 산정)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산정 계산식 ▶ 제38조(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의 산정)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 ▶ 제39조(가산금)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 x 일수
▶ 제33조(분담금의 추가징수) 사후정산 시 추가 분담 가능,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면제 가능	▶ 제41조(추가분담금의 징수 및 감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계한 분담금을 완납한 자
▶ 제3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 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자와 사업장 국외 이전의 경우 기후부장관에게 사전 신고	▶ 제42조(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 등의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부의무 승계, 국외 이전 승계 신고
▶ 제37조(분담금 미납 등 공표) 분담금 미납 기업 공표	▶ 제43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미납 등 공표 방법) 관보 또는 정보시스템에 게재
▶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소속기관, 기술원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업무 위탁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기후부장관이 과학원, 피해관리센터, 기술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위탁 업무 규정
▶ 제52조(과태료) 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자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 제51조(과태료 부과기준) 납부의무 승계 미신고(5백만원), 국외 이전 미신고(1천만원) 등